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7.(화)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/ 배포 2024. 5. 7.(화) 08:30

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 -
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“공정위”)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**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**하는 내용의 「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공정거래법’) 시행령 개정안이 **오늘 국무회의를 통과**하였다고 밝혔다.

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·3세로의 경영권 승계,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,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**다양한 쟁점이 발생**하였으나 **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**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·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.

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**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**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**환경 변화에 대응**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**동일인 판단기준**을 **명문화**하여 동일인 판단의 **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**하고자 하였다.

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, **친족 등** 특수관계인의 **경영참여·출자·자금거래 관계** 등이 **단절**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**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**를 **동일인**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즉, ▲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**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**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(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), ▲기업집단을 지배하는 **자연인**이 **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**(같은 항 제2호 가목), ▲해당 자연인의 **친족**이 **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**(같은 항 제2호 나목), ▲해당 자연인의 **친족**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**경영에 참여하지 않고**(같은 항 제2호 다목), ▲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**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**(같은 항 제2호 라목)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

<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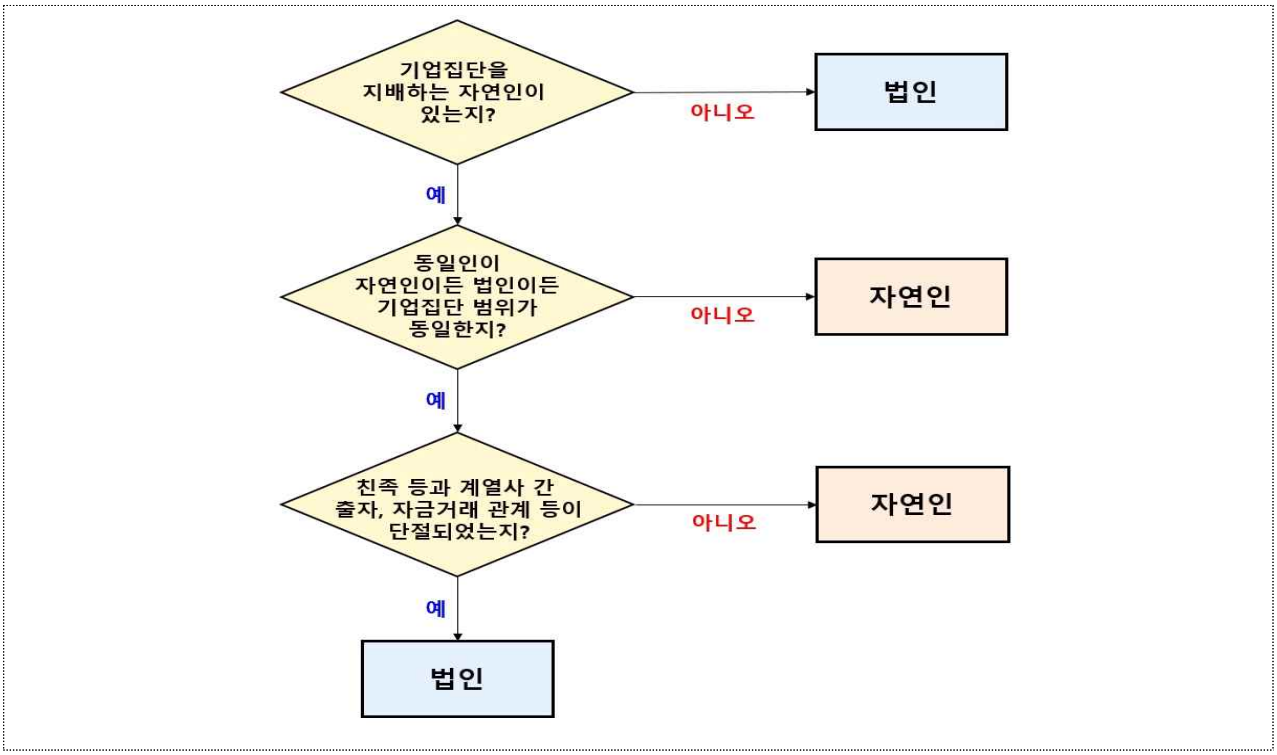

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**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**에는 다시 **자연인**을 **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**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(시행령 제38조 제5항).

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**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**이다.

공정위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**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**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·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<붙임>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병건 (044-200-4932)
		담당자	서기관	김창완 (044-200-49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공정거래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38조(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. 1.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

	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(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

<신 설>	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.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	⑦ ----------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---------- ----------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---------- ----------

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⑦ (생 략)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----------. ⑧ ----------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---------- ----------. 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 ⑩ ------ 제9항---------- ---------- 지정, 변경 지정 및 ---------- ----------
제92조(규제의 재검토) (생 략) <신 설>	제92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